

[가평군시설관리공단 공고 2025-1]

## 『 육아휴직 대체인력 총원을 위한 』

# 2025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가평군시설관리공단에서 함께 근무할 참신하고 의욕적인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년 1월 16일

**가평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**

## 1. 채용분야 및 인원, 근무조건

분야	근무장소	인원	채용기간	근무일	근로시간	급여 및 복지 수준
1	교통약자이동 지원센터	1명	2025. 3. 4. ~ 2026. 2. 27.	월 ~ 금	일 8시간 / 주 40시간	- 월급: 2,276,010원(가평군 생활임금) ※ 2026년도의 경우 가평군 생활임금 적용 - 기타 복지 1. 복지포인트 월25,000원 2. 명절후가비 500천원(추석, 설)
2	연인산다목적 캠핑장	1명	2025. 2. 5. ~ 2025. 7. 31.	월 ~ 금	일 8시간 / 주 40시간	
3	청평호반 문화체육센터	1명	2025. 2. 5. ~ 2025. 12. 31.	월 ~ 금	일 8시간 / 주 40시간	

※ 주요직무: 1분야(고객상담 및 예약), 2분야(고객응대 및 환경정비 등), 3분야(시설환경정비 등)

※ 육아휴직자가 휴직을 연장할 경우 채용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.

※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일, 휴일 및 근무시간은 변경(조정)될 수 있음.

■ 임금지급: 월급(월 1회, 익월 10일 이내 지급)

■ 기타사항: 4대 보험 가입,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수당 및 휴가 부여

## 2. 채용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

### ■ 응시 자격기준

구 분	자격기준
공통	<p>「아래 공통 자격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」</p> <p>1. 연 령: 채용예정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 60세 이하</p> <p>2. 거주지: 공고일 1일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가평군 내로 되어 있는 사람</p>

### ■ 결격 사유

#### 공단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 시행내규 제11조(기간제 근로자의 자격제한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심판을 받은 사람
 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3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  4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  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단직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6의5.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

## ■ 우대 사항

자격사항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 및 보호 대상자
2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
3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배우자 또는 자녀 중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
4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
5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6.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
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
8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

※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에 미달될 경우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※ 2가지 이상의 가산대상에 해당될 경우 그중 유리한 가산점수 1가지만 적용됩니다.

※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적용됩니다.

## ■ 우대사항 제출서류(해당자에 한하여 원서접수 시 제출)

구 분	제출서류
취업지원대상자	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(원본제출, 보훈관청 발급)
장애인	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명서(원본제출, 시/군/구 민원실 또는 주민센터 발급)
북한이탈주민	북한이탈주민확인서(원본제출, 통일부 또는 시/군/구 민원실 발급)
다문화가족	주민등록등본,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중 한 가지 (다문화가족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, 원본 제출)
의상자 및 의사·상자 배우자 및 자녀	본인- 의상자증명서, 배우자 및 자녀 - 의사·상자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(원본 제출, 시/군/구 민원실 발급)
국민기초생활수급자	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(원본제출, 온라인 정부24, 오프라인 시/군/구 민원실 발급)
차상위 계층	차상위계층 확인서(원본제출, 온라인 복지로, 오프라인 시/군/구 민원실 발급)

### 3. 채용일정

추진기간	추진내용	비고
'25. 1. 16.	채용 공고	공단 홈페이지, 클린아이 등
'25. 1. 17. ~ 1. 23.	원서 접수	방문접수 또는 e-mail
'25. 1. 24.	서류접수 결과발표, 면접시험 일정공고	공단 홈페이지, 클린아이 등
'25. 2. 3.	서류전형 적격심사: 13:00(예정)	한석봉체육관 지하1층 회의실
	면접시험: 14:00(예정)	한석봉체육관 지하1층 회의실
'25. 2. 4.	최종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	공단 홈페이지, 클린아이 등

※ 추진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### 4.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

#### ■ 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5. 1. 17.(금). ~ 1. 23.(목) / 09:00 ~ 18:00
- 접수방법: 방문 접수 또는 E-mail(132485@gpfmc.or.kr)
- 접 수 처: 한석봉체육관 2층 사무실
- 제출서류

구 분	제출서류
원서접수 기간 내 제출서류	1. 응시원서 2. 직원 채용시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3.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 4. 가점 서류(붙임 참조) / 해당자에 한함.
면접(당일) 시 구비 서류	1. 주민등록등본 1부(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) 2. 기타 응시자격 증빙자료

※ 구비서류는 반드시 공단 소정(채용공고)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

↳ 공단 홈페이지([www.gpfmc.or.kr](http://www.gpfmc.or.kr)) → 알림방 → 채용정보 → 2025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

## 5. 채용절차 및 방법

### ■ 채용절차

- 1) 1차 서류심사: 응시 자격 기준 부합 여부 심사(적격 여부)
- 2) 2차 면접심사: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
- 3) 면접심사 평가항목: 50점 / 각 항목 당 10점 만점

평가항목	평가 점수	심사 기준					비고
		매우우수 (9~10)	우수 (7~8)	보통 (5~6)	미흡 (3~4)	매우미흡 (1~2)	
합계	50						
고객지향 및 공익추구 자세	10						
창의성	10						
예의·품행 및 성실성	10						
문제파악 및 해결능력	10						
직무 전문성	10						

각 위원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이 보통(30점)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항목에 대하여 미흡(4점) 이하로 평가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.

※ 동점자 발생 시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0조(합격기준) 제3항에 따름

\* 주의사항: 블라인드 면접으로 응시자의 개인 신상 밝힐 금지(친인척 중 유명인사 또는 고위직, 본인에게 유리한 성장배경, 가족관계, 학력, 사회경력 등 의도적 전달 행위)

### ■ 최종 합격자 결정: 면접 100%(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)

※ 채용 결과 발표 후 채용 포기, 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 합격자 제도에 의한 추가 채용

### ■ 예비 합격자 제도 운영

- 추진근거: 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10조의2
- 최종결정: 공단의 내·외부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사장이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
- 인원규모: 예정인원의 2배수(분야별 상위 2명)
- 적용기간: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개월

### ■ 합격자 발표: 공단 홈페이지([www.gpfmc.or.kr](http://www.gpfmc.or.kr))채용 공고 발표

## 6. 고용의 해고

■ 최종 합격 후 근무태도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영시행내규 제47조(고용의 해고)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의 해고가 될 수 있음.

1.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로서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고 개선의 정이 없다고 판단될 때
2. 출·퇴근 시간 및 근무태도의 불량 또는 기타 사유로 3회 이상 지적 당하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 또는 1월 결근일수 합계가 7일 이상인 때
3.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의 시설물 또는 기구류를 파괴하거나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
4.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공단의 운영에 손해를 끼친 때
5. 경력을 낮게 또는 높게 사칭하여 입사하거나 직위(급)을 사칭한 때
6. 사회통념상 신체·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7. 공금의 횡령·유용 또는 향응을 받거나 배임한 때(금액의 제한은 없음)
8.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사 또는 동료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때
9. 허가 없이 공단 안에서 불온문서의 배부, 시위·집회 등에 참여한 때
10. 공단의 비밀을 누설하여 손해를 끼친 때
11.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1년 이내에 직장 복귀를 할 수 없게 된 때
12.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개선의 가능성성이 없다고 판단된 때
13. 근무지변경 등 업무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종 한 때
14. 이사장의 승인 없이 타 사업장에서 일을 한 때
15. 형사상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을 때
16. 정기 또는 임시 건강진단결과 취업의 부적격자로 판정된 때
17. 사업운영상 부득이 감원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
18. 공단 취업규정 제11조를 위반 하였을 때
19.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

## 7. 기타 유의사항

- 인사청탁, 제출서류의 위변조, 허위사실기재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 후 적발된 날로부터 5년 간 공단 채용시험 응시가 제한됩니다.
- 제출된 서류의 기재·착오·누락 또는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

이며, 접수마감 후 제출서류는 일체 변경·추가보완 등이 불가합니다.

- 해당분야 적격자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결과 등에 따라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고,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됩니다.
- 제출된 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합니다.(채용 여부가 확정 된 날 이후 90일까지 청구 기간이며 청구 시 14일 이내 반환됨. 비용발생 시 본인부담.)
- 불가피한 사유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공고합니다.
-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우리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과 친인척(배우자, 4촌이내 혈족·인척)인 합격 인원은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됩니다.
- 본 공고 사항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유권해석에 따릅니다.
- 기타문의: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인사 담당자([☎031-8078-8041](tel:031-8078-8041))